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6
------	---

제출연월일 : 2026. 8. 13.
제 출 자 : 송 파 구 청 장

1. 제안이유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소 재 지: 송파구 동남로 28길 40, 4층(오금동)
- 시설규모: 91㎡
- 운영인력: 4명(센터장 1명-비상주/무보수, 팀장 1명, 팀원 2명)
- 시설 및 위치도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2026. 12. 1. ~ 2029. 11. 30.(3년)
- 위탁사무
 -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장애인가족에 대한 상담·사례관리, 긴급 돌봄 지원, 부모·비장애 형제자매 역량강화교육, 장애인식개선사업 등
- 민간위탁 필요성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특성 및 욕구에 기반한 지역사회 서비스체계 구축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의 위탁 운영이 필요함
- 2026년 보조금: 212,106천원(시비 96,053, 구비 116,053)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26. 8. 6.)

라. 향후 계획

- 2026. 9.~10.: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 2026. 11. : 수탁기관 선정 상임위 서면보고
- 2026. 11. : 위·수탁 협약체결 및 인수인계

3.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장애인가족 지원)
-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9조(협약체결 등)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장애인가족지원센터)

-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3.6.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11.12.12., 2013.6.20.〉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하고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④ 구청장은 제4조의2제2항의 심사대상 사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20., 2014.10.23.〉

⑤ 제4조의2제2항의 심사대상이 아닌 사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는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0.23.〉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필요 시 그 내용은 공증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협약내용 위반시 조치 등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개정 2013.6.20.〉 〈삭제 2022.5.19.〉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